

한국남부발전(주) 2022년 개방형 계약직(미디어홍보실장) 채용공고

한국남부발전(주) 2022년 개방형 계약직(미디어홍보실장)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2년 11월 23일
한국남부발전(주) 사장

- 한국남부발전(주)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 방법과 절차는 응시자의 성별·신체조건·용모·학력·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.
- 한국남부발전(주)는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채용 소과정에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여 채용을 진행합니다.
-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2에 의거 합격이 취소처리되며 향후 5년간 당사 입사지원이 제한됩니다.

I

채용개요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- 채용분야 : 미디어홍보실장 (민간 전문가 전담직위*)
 - * 민간 전문가 전담직위 :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(개방형 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)자는 지원불가
- 채용인원 : 1명 (단,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)

2. 채용조건

- 채용형태 : 개방형 계약직
- 채용직급 : 2직급
- 계약기간 : 2년
 -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
□ 주요 수행업무

○ 미디어홍보실 업무 총괄

- 대외 브랜드전략(대언론 홍보 및 광고 협찬 포함) 수립 및 시행
- 통합공시, 정보공개, 경영공시 업무
- 사보, 사내방송, 전시, 회사 홍보자료(사사 포함) 관리 등

※ 단, 직제개편 및 인사운영상황 등 회사경영 여건에 따라 담당업무 조정 가능

□ 처우수준

○ 근무지역 : 본사(부산) (단, 향후 회사 여건에 따라 각 사업장으로 변경 가능)

○ 보수수준 : 2직급 기준으로 간부직원연봉규정에 따름

- 연봉 약 8,200만원 수준 (세금 등 공제 전 금액, 성과급 별도)

※ 성과급 포함시 약 10,900만원 수준(21년도 성과급 지급률 및 각종평가 C 기준)이며, 관련 규정 및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세부금액 변동 가능

※ 해당 연봉은 공고시작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, 향후 직무등급 변경 등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세부금액 변동 가능

○ 복리후생 : 정규직에 준함

□ 예비합격자 운영

○ 운영기간 : 6개월

- 합격예정자 결정 단계에서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
- 채용 확정 후 입사포기 또는 6개월 이내 퇴사시 차순위로 추가 선발 가능

3. 지원자격

□ 일반자격

○ 학력, 전공, 연령, 외국어 : 제한없음

○ 병역 : 군필 또는 면제인자 (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전에 전역가능한 자)

○ 기타사항

-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채용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
- 민간 전문가 전담직위 지원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

(1) 한국남부발전 재직자 지원 불가

(2)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(개방형 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)자는 지원 불가

□ 전문자격

○ (필수사항) 기업의 홍보 또는 마케팅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

○ (우대사항) 미디어홍보 등 관련부서 부서장(팀장급) 이상 보직자(또는 였던자)

※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: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

4. 전형방법

전형단계	내 용	세부사항	비 고
1단계	서류전형	○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- KOSPO 핵심가치에 따른 지원서 심사	5배수
2단계	면접전형	○ 직무역량 기반 심층면접 (100점) - 자격검증, 조직적합성, 인성평가	1배수
3단계	신체검사,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회	○ 적부판정	최종합격

□ 면접전형 과락기준

- 면접점수 득점의 합계가 전체 배점의 60%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으로 판단하며, 과락여부는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하여 판단

□ 합격자 및 동점자 결정방법

- 최종합격은 면접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- 동점자 처리
 - 1단계(서류전형) : 전원합격
 - 2단계(면접전형) : 보훈>장애>'면접 평가요소 중 자격검증 > 조직적합성 > 인성'순으로 결정

5. 제출서류 (면접전형시 제출)

※ 모든 증빙은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처리

- 기본증명서(상세) 원본 1부 (필수)
- 신원진술서(작성양식 별도안내) 원본 1부 (필수)
- 최종학교 졸업(예정) 증명서 원본 1부 (필수)
 - 대학교 중퇴, 재학, 휴학중인 자 :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+ 대학 중퇴, 재학, 휴학증명서 제출
- 주민등록초본 (병역사항 기재 필수)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 원본 1부 (필수)
- 경력증명 서류 - (1) ~ (3) 모두 제출 (필수)
 - (1)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(해당기관 직인날인 필수) 원본 1부
 - ☞ 지원분야 자격사항에 맞는 직무와 근무기간이 명시적으로 표출된 건에 한해 유효한 증빙으로 처리
 - (2)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원본 1부
 - (3) 소득금액증명 (국세청 발급) 원본 1부
-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(필수)
-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 1부 (필수)
-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원본 1부 (필수)
-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 (공고마감일 이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) (해당자에 한함)
- 장애인 증빙서류 원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- 취업보호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 증빙서류 원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- 저소득층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) 증빙서류 원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
6. 우대사항 적용대상

가산 유형	유형정의	전형별 가산점		증빙서류
		서류	면접	
등록 장애인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자	면제	배점의 10%	장애인 증빙서류
취업보호 대상자 (보훈)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○ "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" 기준 ※ '국가유공자(가족) 확인서' 인정 불가	면제	-	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
저소득층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한부모가정지원 대상자 포함)	배점의 5%	-	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한부모가정 증빙서류

- ※ 전형별 가산점은 10% 한도 내 중복 인정
- ※ 서류전형 면제 및 서류전형 가점부여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당초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가능
- ※ **본 공고의 경우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모집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면접전형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음**

1. 전형일정

절 차	일 정	비 고
채용공고	'22.11.23.(수) 11:00 ~ 12.8.(목) 11:00	○ 회사 홈페이지 (https://www.kospo.co.kr)
지원서 접수	'22.11.29.(화) 11:00 ~ 12.8.(목) 11:00	○ 채용 홈페이지 (https://kospo.saramin.co.kr)
면접전형 대상자 발표	12.15.(목) 오후 6시	○ 채용홈페이지, 문자 통보
면접전형	12.21.(수)	○ 합격자 개별 통보
최종합격자 발표	'23.01.04.(수)	○ 채용홈페이지, 문자 통보

※ 상기 일정은 인사운영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변경시 채용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

2. 유의사항

- 부정합격자(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), 「인사관리규정」 제10조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 및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취업규칙 제63조 제①항 제4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 처리됩니다.
- 「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가족인 경우 법률에 따라 채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서류전형 면제 대상자도 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 포함) 작성 후 최종제출을 하셔야 입사지원이 완료됩니다.
- **모든 채용전형에서** 성명, 성별, 연령, 출신 학교, 부모나 친척의 신분 등 **블라인드 채용 위배시, 불합격 처리를 포함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됩니다.**
-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만 지원 가능합니다.
-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,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서 허위작성, 증빙서 위변조 제출,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어느 전형단계든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지원이 제한됩니다.
- **면접전형 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)을 지참하여야 하며,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합니다.**
- 입사지원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,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동시행령, 시행규칙에 따라 제출서류는 채용확정일 이후 180일 내에 청구된 경우 반환하며, 이의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남부발전 사외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- 채용서류 반환 요청 방법 : www.kospo.co.kr 접속 → 회사소개 → 채용정보 → 채용문의 → 채용서류 반환신청
- 지정기간 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1항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
- 이의신청 절차 : www.kospo.co.kr 접속 → 회사소개 → 채용정보 → 채용문의 → 채용 관련 이의신청
-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
 -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
 -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,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 -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-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 이외에는 우리 회사 「인사관리규정」 및 「채용업무관리세칙」, 「간부직원연봉규정」 등 사내외 관련 규정 및 법률, 각종 정부가이드 라인에 따릅니다.
또한, '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'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」 및 「국토교통부 예규 639호」를 따릅니다.
- 채용비리 발생 시에는 우리 회사 「인사관리규정」 별표 39(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 라인)에 따라 구제합니다.
- 면접 응시자 중 최종합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하고, 합격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합니다.
 - 결원 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의 추가 합격발표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6개월로 함
 - 최종전형 합격자의 신체검사·신원조사 부적격 판정 시 또는 최종합격자 미입사시, 부정 채용 등에 의해 합격되지 못한 피해자 구제시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
 - 예비합격자 합격자 발표 방법 : 회사전화를 활용(070-7713-****)하여 접수된 개인 휴대전화로 3회까지 연락 후 연결 불가 시 차순위자에게 합격자 기회가 넘어 감
- 최종합격예정자(또는 최종합격자)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문자, 이메일 등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면접전형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에 따라 증빙 서류를 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, 지원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산점 적용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코로나-19 관련 안내사항
 - 코로나-19 확진자는 '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'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며, 방역당국의 입장에 따라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
 -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, 예방수칙 강화 등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시험일정 등은 변경이 가능함
- 문의처 (유선상의 문의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게시판 또는 플러스친구를 통한 문의 부탁드립니다.)
 - 채용전형관련 문의(월~목요일 : 14~18시, 금요일 : 13시~15시)
 - 한국남부발전(주) 인재경영부 ☎ 070-7713-8219 / E-mail : insa@kospo.co.kr
 - 지원시스템 및 기타 상시 문의 : 지원시스템 게시판 Q&A
 - 채용 문의 관련 챗봇 운영 :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'남부발전' 검색

별첨 : 1. 인사관리규정 제10조 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
2.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
3. 채용서류 반환청구서. 끝.

[인사관리규정 제10조 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]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(破産者)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(懲戒)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(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)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
9.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10.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11.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(채용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)
1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3. 공무원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4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5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

○ 채용비리 피해자 :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자

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

- (피해자 특정 가능시)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채용시 기회 부여

* 예 :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,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

- 최종 면접단계 피해 →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
- 필기단계 피해 →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
- 서류단계 피해 →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

- (피해자 특정 불가시)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

* 예 :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,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

- 최종 면접단계 피해 →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
- 필기단계 피해 →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
- 서류단계 피해 →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

*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시험 재실시

② 부정합격자 확정·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

③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 시기

- (진행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시)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
- (진행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가능시)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

[별첨 3]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남부발전(주) 사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